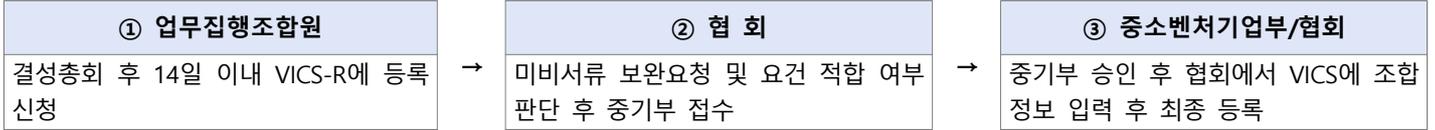


벤처투자조합 통합 매뉴얼(등록·변경·해산·청산)

< 2024년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정보센터 >

1] 등록신청

□ 업무절차



□ 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상세	
공문	- 수신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조합 소재지 관할 지방청 * 개인 유한책임조합원 및 운용인력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수령 및 보관 내용 기재 * 규약상 대표/일반 펀드매니저 미구분 시, 공문상 대표/일반펀드매니저 구분 기재 필수	
신청서 (별첨1 참고)	- 출자금 총액은 결성시점의 약정총액 기재 - 유한책임조합원수: 업무집행조합원을 제외한 유한책임조합원의 수 - 존속기간: '0년'으로 기재(날짜형식 기재 불가)	
규약	-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별지1(벤처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의 '조합원 서명란 혹은 동의서'에 조합원 전원 기명날인 또는 서명 후 제출	
결성총회의사록 및 의결서(또는 서면결의서)	- 등록 시에는 조합원 전원동의 필수	
조합원명부 (별첨2-1 참고)	- 조합명, 조합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약정총액, 설립출자금액, 출자좌수 기입 필수 *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의 경우 국적 표시 * 10% 이상 출자한 벤처투자조합 및 집합투자기구, 신기술조합, 특정금전신탁의 총 출자자 수 명시	
출자금 납입확인서	- 조합명, 조합원명, 납입일자, 납입금액 포함 * 신탁업자의 날인이 찍힌 서류만 가능하며, GP사가 인터넷뱅킹으로 출력한 자료는 불가	
자산보관 및 관리 위탁계약서	- 수탁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고유번호증	- 고유번호증 상의 조합명을 기준으로 서류 및 VICS-R의 조합명 통일	
조합분류표 (별첨4 참고)	- 대분류 내에서 세부항목 중복선택 가능	
선택제출서류	상세	
위탁자(출자자) 명부 (별첨2-2 참고)	- 집합투자기구(10%이상출자), 벤처투자조합(10%이상출자), 신기술투자조합, 특정금전신탁, 민법상조합이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출자한 경우 * VICS-R에 정보가 있는 벤처투자조합의 명부는 취합하지 않음	
업무집행조합원 인가·등록 증빙서류	투자매매(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 투자매매(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인가증(자본시장법) * 투자매매(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는 단독 GP 불가 * 집합투자업자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 등록증(등록공문) 확인
	신기술사업금융회사	- 금감원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증 또는 금융위 등록 통보 공문
재무제표 (최신 날인본)	유한(책임)회사 (LLC)	-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 재무제표확인서류(날인본) 제출 (조건) 부채비율 200% 미만
	창업기획자	-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 재무제표확인서류(날인본) 제출 * 비영리법인인 투자 사업에 대해 구분 기록한 자료로 제출 (조건) ① 부채비율(200% 이하) ② 자본금(신규+운영 중인 조합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약정총액의 1% 이상) ③ 경영건전성(자본잠식률 50%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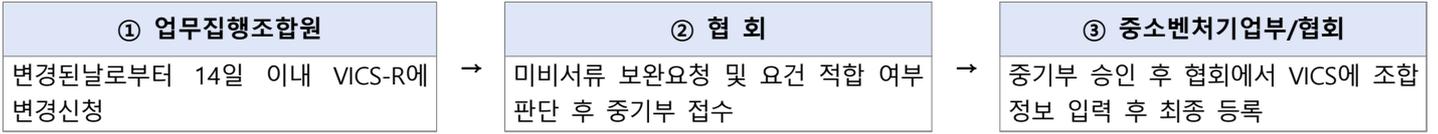
<p>사원명부 및 경력증명서 (날인본)</p>	<p>유한(책임)회사 (LLC)</p>	<p>- 경력증명서 * 협회에서 발급하는 벤처캐피탈근무경력확인서로 대체 가능 (조 건) ① 전문인력 중 1인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일 것 ② 투자 관련 업무 경력 5년 이상 1인 And 3년 이상 2인 또는 5년 이상 2인</p>
<p>인정투자 증빙서류</p>	<p>프로젝트 조합</p>	<p>- 중소기업확인서+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p>

※ 참고사항

- ① 모든 서류는 조합원의 날인(또는 서명)을 통일하여 작성
- ②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은 운용사, 특정금전신탁은 신탁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 ③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LP로 참여한 경우 규약 조합원 동의서(또는 조합원 서명란)와 총회의사록 의결서(또는 서면결의서)에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함께 받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④ 조합 등록 시 고유번호증과 제출서류, VICS상 조합명은 띄어쓰기, 특수문자, 글자(한글, 영문 포함)까지 모두 동일 필수
- ⑤ 고유번호증 발급 후 3개월 이내 조합 등록 완료 필수(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고유번호증은 제출불가)

② 변경신청

□ 업무절차



□ 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상 세	
공 문	- 수신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조합 소재지 관할 지방청 * 개인 유한책임조합원 및 운용인력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수령 및 보관 내용 기재	
신청서 (별첨1 참고)	- 출자금 총액은 가장 최근에 변경된 약정총액 기재	
변경구분	제출서류	
규 약 (별첨5 참고)	- 총회의사록 및 의결서(또는 서면결의서) - 최신규약 - 규약신구대조표(별도의 파일로 첨부)	
출자금변동	추가출자	- 추가납입 거래내역서(조합원별 납입내역 포함) * 신탁업자의 날인이 찍힌 서류만 가능하며, GP사가 인터넷뱅킹으로 출력한 자료는 불가 - 조합원명부
	중간배분	- 총회의사록 및 변경세부사항(원금/수익)이 명시된 자료 - 입금내역 증빙서류(조합원별 납입내역 포함) * 신탁업자의 날인이 찍힌 서류만 가능하며, GP사가 인터넷뱅킹으로 출력한 자료는 불가 - 조합원명부
운용인력 (별첨3 참고)	- 공문기재 혹은 조합 운용인력 변경 사항 자료 별도 첨부 * 운용인력 변경일 필수 기재((신)인력의 업무시작일과 (구)인력의 업무종료일은 동일날짜) * 대표펀드매니저 및 일반펀드매니저 구분하여 기재(대표펀드매니저 1인 필수 지정) * 대표펀드매니저 변경 시 규약변경을 반드시 수반하여 함	
조합정보	업무집행조합원의 사명/소재지	- 고유번호증 - 업무집행조합원(GP사) 등기부등본(말소포함) * 조합일괄변경을 통해 전체 운용조합 변경 가능(신청서 및 공문은 1장에 일괄 작성)
	조합명	- 총회의사록 및 의결서(또는 서면결의서)
	존속기간연장	- 총회의사록 및 의결서(또는 서면결의서)
	유한책임조합원 사명	- 사명/성명 변경 증빙서류 ① 법인: 유한책임조합원의 등기부등본(말소포함) ② 개인: 유한책임조합원의 개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조합원명부
양도양수	- 총회의사록 및 의결서(또는 서면결의서) - 양수도계약서 - 조합원명부(전/후) *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합병], [분할], [증여], [상속]도 양수도 거래로 간주	
약정총액	신규조합원 추가	- 총회의사록 및 의결서(또는 서면결의서) * 조합원 변동에 따른 규약변경 필수 - 신규조합원 등록 자료 ① 개인: 조합원명부 상 생년월일 기재 및 개인정보동의서 징구/보관 내용 공문 명시 ② 집합투자기구·벤처투자조합(10%이상)/특정금전신탁/신기술조합: 출자자명부 - 해당조합원의 출자금 납입확인서 - 조합원명부(전/후)
	기존조합원 증액/감액/(자연)탈퇴	- 총회의사록 및 의결서(또는 서면결의서) - 조합원명부(전/후) * 증액과 동시에 납입한 경우 추가납입 거래내역 증빙서류 * 조합원 변동에 따른 규약변경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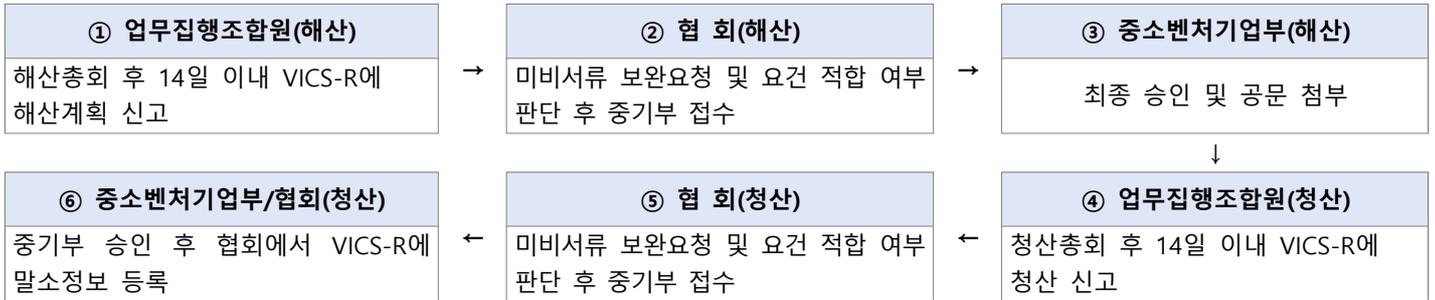
펀드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수도계약서 - 총회의사록 및 (서면)결의서(변경되는 모든 내용 의안에 포함) - 최신규약 및 규약신규대조표 - 업무집행조합원(양수GP)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 조합원명부(전/후) - 조합 운용인력 변경 사항 자료(협회 홈페이지 예시 참고) * 대표펀드매니저 및 일반펀드매니저 구분하여 기재(대표펀드매니저 1인 필수 지정) * 공문상에 운용인력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수령 및 보관 내용, 운용인력 변경일 기재 필수
	신기술사업금융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감원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증 또는 금융위 등록 통보 공문
	유한(책임)회사 (LL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 재무제표확인서류(날인본) 제출 (조 건) 부채비율 200% 미만 - 경력증명서 * 협회에서 발급하는 벤처캐피탈근무경력확인서로 대체 가능 (조 건) ① 전문인력 중 1인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일 것 ② 투자 관련 업무 경력 5년 이상 1인 And 3년 이상 2인 또는 5년 이상 2인
	창업기획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 재무제표확인서류(날인본) 제출 * 비영리법인은 투자 사업에 대해 구분 기록한 자료로 제출 (조 건) ① 부채비율(200% 이하) ② 자본금(신규+운영 중인 조합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약정총액의 1% 이상) ③ 경영건전성(자본잠식률 50% 미만)

※ 참고사항

- ① (신청서) 변경신청서 상의 출자총액 기입란은 가장 최근의 약정총액으로 작성
- ② (존속기간) 청산기간 연장 신청은 불가하며, 존속기간으로 대체
- ③ (펀드이관) 업무집행조합원(양수자)은 등록 시와 동일한 서류 제출 및 검토요건 확인
- ④ (중간배분) 수익배분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원금 배분 발생시에만 신고
- ⑤ (양도·양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합병·분할]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합병/분할에 따른 공시 자료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여]는 중여계약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은 사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양수도계약서 대체

3] 해산 및 청산신청

□ 업무절차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해 산 (별첨6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문 - 해산계획서 <li style="padding-left: 20px;">* 해산 시점에 약정총액을 100% 납입하지 못해 감액하는 경우, 공문 상에 약정총액을 감액한다는 내용 명시 및 관련 증빙서류(총회의사록, 의결서 등) 첨부 - 해산총회의사록 - 의결서(또는 서면결의서) - 해산배분 내역 증빙서류(해산계획 신청일자 전까지 배분이 있을 경우에 한함) - 조합원명부
청 산 (별첨7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문 - 청산결과보고서 - 청산총회의사록 - 의결서(또는 서면결의서) - 청산감사보고서(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청산감사보고서) - 청산배분 내역 증빙서류 <li style="padding-left: 20px;">* 해산과 청산을 병행하여 진행할 경우, 청산관련 신청서류와 해산계획서 함께 제출

※ 참고사항

① 해산 또는 청산 시, 현금+현물 or 현물 배분이 있을 경우

: 주식배분의 경우 주주명부, 주주명의개서 등 추가서류 및 관련 공문 제출

② 해산총회 때 청산기간 설정 시 공문에 존속기간 연장 신청 내용 명시

□ FAQ

Q1. (등록)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집합투자기구, 특정금전신탁이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출자할 때, 규약에 명시해야 할 정보는 무엇인가요?

- A1. ① 고유계정,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집합투자기구, 특정금전신탁 등 출자의 성격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 고유계정인 경우에 “OO증권(고유)” 명시)
② 집합투자기구 및 벤처투자조합이 10% 이상 출자할 경우와 특정금전신탁, 신기술투자조합, 민법상조합이 출자할 경우 해당 조합원의 투자자 수를 규약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Q2. (등록)유한(책임)회사(LLC)가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한가요?

- A2. 유한(책임)회사는 모태펀드 출자를 받은 조합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도 벤처투자조합 결성 가능합니다.

Q3. (등록)프로젝트성 펀드(한 기업에 100% 투자) 결성이 가능한가요?

- A3. 해당 조합이 모태출자 조합일 경우에는 모태 규약에 따르며, 모태 비출자 조합인 경우에는 100%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경영·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 인정투자 대상이며 인정투자의 방법에 해당될 경우에 가능합니다.

Q4. (등록)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출자할 때, 등록을 위해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 A4. 집합투자기구 및 벤처투자조합이 10% 이상 출자할 경우와 특정금전신탁, 신기술투자조합, 민법상조합이 출자할 경우 해당 조합원의 출자자명부(출자자 서명, 생년월일, 투자금액 등이 기재된 날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5. (약정총액)약정총액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도 변경등록 신고사항 인가요?

- A5. 약정총액의 변동은 변경등록 신고 사항입니다. 약정총액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출자납입확인서, 조합원명부, 규약 신규대조표, 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 해산 시 ‘약정총액 > 최종 납입액’으로 조합 규모를 조정하는 경우 약정총액 감액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출자가 closing 되었고, 최종 납입액이 약정총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으로 변경신청을 합니다. 관련 내용의 총회의사록과 의결서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Q6. (GP)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는 벤투사, 신기사, LLC 등과 함께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산운용사가 자회사인 벤처투자회사와 공동으로 벤처투자조합 운영이 가능 한가요?

- A6. 벤투사와 그 모회사(또는 계열회사)의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자본시장법)는 공동업무집행조합원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Q7. (GP)업무집행조합원 지분 양도는 가능한가요?

- A7. 「벤처투자법」 제65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에 관하여 동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상법」 제86조의7제1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 결성 후 GP가 일부 지분을 LP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 결성 시에는 우선 GP 지분으로 등록하고 추후 양도 시 조합원 전원 동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권고합니다.

Q8. (GP)벤처투자법 제50조제5항과 관련하여 벤처투자조합을 운용하는 벤투사는 회사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나요?

A8. 해당법령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운용하고 있는 벤투사는 신기사, 유한(책임)회사, 창업기획자 등으로 회사의 형태를 바꿀 수 없으며,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운용 중인 벤처투자조합을 타 GP로 출자지분의 100% 양도 후 가능합니다.

Q9. (LP)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업자도 집합투자업자로 볼 수 있나요?

A9. (금융위 해석)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9조제29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집합투자업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10. (LP)벤처투자법 시행령 제34조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투자자는 LP수에서 제외되나요?

A10. 해당법령에 따른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근거법령

구 분	요건·의무	내 용	법령(벤처투자법)
업무집행조합원 (GP)	유한(책임)회사 (LLC)	- 전문인력 요건 ① 전문인력 중 1인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일 것 ② 투자 관련 업무 경력 5년 이상 1인 And 3년 이상 2인 또는 5년 이상 2인 * 전문인력 경력 인정기관: 벤처투자회사, 유한(책임)회사, 기술지주회사, 신기술 사업금융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부채비율 200% 미만	- 법 제50조① - 영 제33조 - 관리규정 제4조②
	창업기획자	- 운용 중인 조합(등록 신청 조합 포함)의 약정총액의 합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자본금이나 출연재산 등이 1% 이상 - 부채비율: 200% 이하 - 자본잠식률: 50% 미만	- 법 제24조③ - 법 제50조① - 영 제13조⑤ - 영 제20조
	요건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 단독GP는 국내지점, 전문인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공동 GP일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법 제50조①
	투자매매(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 공동GP만 가능, 단독GP 불가능 - 인가증 증빙 필요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 중 하나로 금융위 등록증 (등록공문) 증빙 필요	- 규칙 제24조⑤ - 「자본시장법」제8조
	GP의 법인성격 변경	- GP의 법인을 변경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GP의 법인성격 변경을 금지하는 것 * 벤투사(A)가 신기술사로 변경금지, (A)벤처사에서 다른 회사인 (B)신기술사로 변경은 가능	- 법 제50조⑤
유한책임조합원 (LP)	유한책임조합원의 수	- 유한책임조합원의 수 49인 이하 * 집합투자기구 및 벤처투자조합이 10% 미만 출자하면 LP 1인으로 산정, 10% 이상 출자하면 출자자를 각각 LP 1인으로 산정	- 영 제34조제3호
		- 특정금전신탁(도관에 불과)의 위탁 계약자 전원을 각각 LP 1인으로 산정(신기술사업투자조합, 민법상조합이 출자한 경우도 해당)	- 없음 (국세청 및 업계 해석)
표준 규약	표준 규약 고시 준수 의무	- 표준 규약 고시를 그대로 준수할 의무는 없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규약 구성	- 없음(내부기준)
출 자	출자 방식	- 분할 출자 허용	- 영 제34조제1호
		- 현금 출자만 허용	- 관리규정 제5조①
	해산 시 출자금 미달	- 출자금 요건을 채우지 않고 해산하려는 조합은 결성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며, 미충족 상태로 해산 강행 시 처분 검토	- 없음(내부기준)
재산의 보관	수탁기관	- 조합재산 보관을 수탁기관에 위탁, 재산 운용 지시 등 - 수탁기관에 위탁(농협, 기업은행 등)	- 법 제53조
업무의 집행	차입/보증/담보	- 자금차입, 지급보증, 담보제공 금지	- 법 제52조②
	업무의 위탁 (GP→LP)	- (위탁범위) 업무의 일부, 단 출자금의 모집은 위탁 불가 - (수탁자) 100분의 10 이상 출자, 채무불이행사항이 없는 유한책임조합원 - (허용조건) 조합원 전원의 동의, 규약에 해당내용 포함	- 법 제52조④ - 관리규정 제4조⑥/⑦
투자의무	조합별 투자의무	- (조합별) 인정투자 20% 이상 - (업무집행조합원(GP사)) 운용조합 40% 이상 ① 벤투사는 총자산(자본금+운용조합)	- 법 제51조 - 영 제35조

구 분	요건·의무	내 용	법령(벤처투자법)
		② 창업기획자는 초기창업기업 조합별 20%, 업무집행조합원 기준 전체 운용조합 40% 이상 투자 * 모태자펀드는 규약에 따름 - (주목적펀드) 구주 60%, M&A 60% 등	
	투자한도 제한	- 상장된 법인의 주식은 출자금 총액의 20% 한도 투자가능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사에 한하며, 상호출자제한집단은 투자불가)	- 법 제51조④
배 분	원금배분	- 출자금 총액*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출자 원금 배분 가능 * LLC, 신기사, 벤투사 : 20억원, 창업기획자 : 10억원	- 관리규정 제5조②
해산 및 청산	해산사유 (조기해산 등)	① 존속기간의 만료 ②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③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④ 업무집행조합원의 벤처투자회사 등록말소 ⑤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전원 조합원의 동의 ⑥ 조합 자산 잠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조합원 보호 목적 ⑦ 그 외 조합재산 상태 악화, 조합원간 불화 등으로 운영이 불가할 경우	- 법 제56조① - 영 제39조① - 관리규정 제11조①
	해산과 청산의 병행	- 의결 성립 시 가능	- 없음(내부기준)
	청산인	-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도 선임 가능(규약에 명시)	- 법 제56조③

[별첨1] 벤처투자조합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12. 21.>

벤처투자조합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	------	------	-----

신청 구분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	---

신청인	조합명	납세고유번호
	업무집행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수
	출자금 총액	존속기간
	주소	(전화번호:)

변경 사항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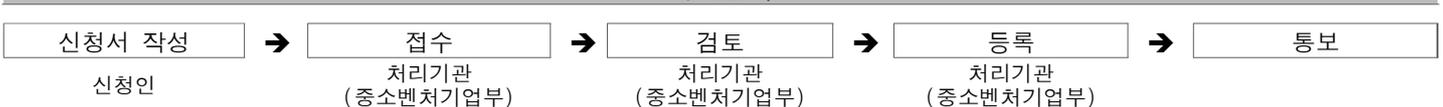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p>1. 등록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조합 규약 사본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다.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3호나목 또는 제41조의2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유한책임 조합원의 수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라. 결성 총회 의사록 사본 마. 조합원의 출자금액과 출자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바. 고유번호증 사본 사.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및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아.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p>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및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투자목적회사의 정관 사본 나. 투자목적회사의 사업계획서 다.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 현황 라. 투자목적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마. 투자목적회사의 재산 및 차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 투자목적회사의 청산결과보고서(재산을 배분한 명세, 청산감사의견서, 청산총회 의사록 사본을 포함) 사. 투자목적회사의 설립에 대한 조합원 총회 의사록 및 결의서 사본 <p>(가.~사. 서류는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한 벤처투자조합으로 한정합니다)</p>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2-1] 조합원명부 예시

조 합 원 명 부

(단위: 좌, 원, %)

No	구 분	출자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약정금액*	납입금액* (출자잔액)	출자좌수*	비 율	국적/비고
	업무집행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							
		특별조합원						
	합 계							

* 필수포함

[별첨2-2] 위탁자(출자자)명부 예시

출 자 자 명 부

(단위: 좌, 원, %)

No.	출자자명 *필수포함	생년월일(사업자번호) *필수포함	출자좌수	출자금액 *필수포함	비율
합 계					

본 출자자 명부는 위와 같이 당 펀드의 출자 현황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함을 알려드립니다.

0000년 00월 00일

***사모투자신탁(인)

[별첨3] 조합 운용인력 예시

- 조합명:
- 운용인력 변동사항

구 분	조합등록* (2022-01-01)	변경(1) (2023-01-01)	변경(2) (2024-01-01)	변경(3) (2025-01-01)	변경(4) (2026-01-01)
대표펀드매니저	김 파 랑	김 파 랑	김 파 랑	이 연 두	-
일반펀드매니저	이 노 랑 이 보 라	이 노 랑	이 연 두	이 초 록	-

* 중기부 승인공문 상 등록일

[별첨4] 조합분류표

< 조합분류표 >

조합명 :

※ 주목적 순위를 □안에 숫자로 기재(최대 3순위까지)

대분류	세부항목			
일반	<input type="checkbox"/> AI·빅데이터	<input type="checkbox"/> AR·VR	<input type="checkbox"/> ICT	<input type="checkbox"/> 기술·특허
	<input type="checkbox"/> 로봇·자동차	<input type="checkbox"/> 문화	<input type="checkbox"/> 바이오·헬스케어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소재·부품·장비	<input type="checkbox"/> 스케일업	<input type="checkbox"/> 스포츠	<input type="checkbox"/> 신성장
	<input type="checkbox"/> 에너지	<input type="checkbox"/> 여성	<input type="checkbox"/> 유니콘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input type="checkbox"/> 재창업	<input type="checkbox"/> 지역	<input type="checkbox"/> 창업초기	<input type="checkbox"/> 청년
	<input type="checkbox"/> 해양·수산	<input type="checkbox"/> 해외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특수산업	산업명 :
-------------------------------	-------

<input type="checkbox"/> 특정기업	기업명 :
-------------------------------	-------

특수목적	<input type="checkbox"/> M&A	<input type="checkbox"/> 세컨더리	<input type="checkbox"/> 지분유동화
------	------------------------------	-------------------------------	--------------------------------

<작성 예시>

예시1) 1 AI·빅데이터, 2 바이오·헬스케어, 3 기술·특허

예시2) 1 특수산업 (산업명 : 관광), 2 지역

년 월 일

업무집행조합원 :

(서명 또는 인)

[별첨5] 규약신구조표 예시

< 규약변경대조표 >

- 조합명:
- 변경개요: 제1조, 제2조~(규약변경사항이 존재하는 모든 조항 표기)

조 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p>① 본 조합의 명칭은 「○○○○」(이하 “조합” 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이라 한다.</p> <p>② 본조합의사무소는업무집행조합원인서울의본점에둔다.</p>	<p>① 본 조합의 명칭은 「○○○○」(이하 “조합” 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이라 한다.</p> <p>② 본조합의사무소는업무집행조합원인부산의 본점에 둔다.</p>	소재지 변경
제36조 (성과보수)	<p>② 한국모태펀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하되, 중복 적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적용한다. 업무집행조합원 등에 대한 별도 성과보수의 합계는 한국모태펀드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초과수익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p> <p>2. 한국모태펀드는 투자금 누계액 1억원 당 2명(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창출을 한 경우 한국모태펀드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된 초과수익 산정 기준가액의 10퍼센트, 투자금 누계액 1억원 당 2명 이상 청년(만 15세 ~39세) 고용창출을 한 경우 15퍼센트 이내에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p> <p>3. 전체 투자금액 대비 창업초기기업에 투자된 투자금액의 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 한국모태펀드는 한국모태펀드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된 초과수익 산정 기준가액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의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 한국모태펀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하되, 중복 적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적용한다. 업무집행조합원 등에 대한 별도 성과보수의 합계는 한국모태펀드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초과수익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p> <p>2. 한국모태펀드는 투자금 누계액 1억원 당 2명(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창출을 한 경우 한국모태펀드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된 초과수익 산정 기준가액의 10퍼센트, 투자금 누계액 1억원 당 2명 이상 청년(만 15세 ~39세) 고용창출을 한 경우 15퍼센트 이내에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p> <p>3. 전체 투자금액 대비 창업초기기업에 투자된 투자금액의 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 한국모태펀드는 한국모태펀드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된 초과수익 산정 기준가액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의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p>	추가성과보수 기준가액 변경
제57조 (기타 특약사항)	(신설)	<p>① 조합은 조합성립일로부터 3년까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자약정액 기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투자비율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p>	신 설

* 파일형식 무관

벤처투자조합 해산계획

개요

- 조합명 :
- 업무집행조합원 : (대표 :)
- 결성일자 : (존속기간:)
- 결성금액 :
- 해산총회일 :

해산사유 :

조합원 및 출자금액

(단위: 백만원, 좌, %)

구 분	조합원명	총 납입금액	출자잔액	좌수	출자비율
업무집행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					
계					

투자실적

(단위: 백만원)

기업명	투 자			회 수			수익률
	투자구분	보유량	금액	회수방식	보유량	금액	

* 투자 및 회수실적 양식 수정가능

자산현황

구 분	금 액 (백만원)
현금자산	
창업투자자산(유가증권)	
미지급금	
기 배분금액	
합 계	

조합운영 수익율(손익/출자원금) : %

조합원별 분배 현황 :

배분계획 :

청산인

○ 명 칭 :

○ 주 소 :

첨부 : 총회 의사록 사본

[별첨7] 청산결과보고서 예시

벤처투자조합 청산결과

조합명 :

개요

- 업무집행조합원 : (대표 :)
- 결성일자 : (해산일 :)
- 결성금액 :
- 청산완료 :

조합원별 출자 및 배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조합원명	출자액	분배금액
업무집행조합원 (성과보수 포함)			
유한책임조합원			
계			

조합운영 수익율(손익/출자원금) : %

성과보수 :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내역 :

회수현황(원금기준)

(단위: 백만원)

결성 총액	투자액									회수									
	인정			불인정						합계	주식						직접 상환 (CB/B W)	프로 젝트	합계
	주식	CB/B W	프로 젝트	주식	CB/B W	프로 젝트	약 정	해 외	I P O		현 물 배 분	GP 인 수	제3자 매각	Secondary- fund매각	M&A				

* 투자액 = 회수